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6.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800원 → 감면 <신설>

○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
-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 300원 → 900원
-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 500원 → 4,500원
-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 300원 → 2,7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 5,000원 → 18,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 20,000원 → 27,000원
- 의료기관(부속) 개설신고수수료 : 20,000원 → 36,000원
- 의료기관(부속)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 10,000원 → 18,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 <신설> 27,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 <신설>9,000원

○ **관련법령 유권해석에 따른 수수료 폐지**
- 납품 및 공사실적증명<삭제>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팀-107(2007.2.12) 및 경상북도 회계과-990(2008.1.24) : 유권해석 공문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증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통**	**9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제외
· 대장문서	1통	300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2) 공부열람			지적관계제외
· 기본료	시간당	100	
· 초과료	10분당	100	
(3)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2)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5)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	1,000 칼라도면첨부-1,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800	
(2)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2) (삭제)			**유권해석**
(3) (삭제)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8.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2) (삭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4,500 연장2,700**	**전국통일**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3)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건**	**법인27,000 개인18,000**	**전국통일**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신청	1건	1,0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2.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 관계			
(가) 어업면허 신청	1건	1,600	
(나)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	
(다)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2)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2)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3) 용제 판매소 등록	1건	10,000	
4.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1/10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3)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1/1000	
(4)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1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1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1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5.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1건	50,000	
(2)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5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신청	1건	20,000	
(5) 복합유통 · 제공업의 신고	1건	10,000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6,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8,000**	**전국통일**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6,000**	**전국통일**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8,000**	**전국통일**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건	20,000	
(6) 안경업소양도 · 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0	
(8) 치과기공소양도 · 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27,000**	**신설**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9,000**	**신설**
8.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 ·허가신청 , 등록 , 지정 , 확인 등으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제외)	1건	500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명띄어쓰기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3.(생략) 〈신 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1.~3.(현행과 같음) **4.**「지방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구 분	기준	요액	참고
<증명>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통	300	
(2)(생략)			
3. ~ 5. (생략)			
6. 회계에 관한 증명			
(1) (생략)			
(2) 납품 또는 공사 실적 증명	1통	300	
(3)(삭제)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생략)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호1년도당	800	
8.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1년도당	800	
(2) (삭제)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구 분	기준	요액	참고
<증명>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통	900	
(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6. 회계에 관한 증명			
(1) (현행과 같음)			
(2) (삭제)			
7. 주택에 관한 증명			
(1) (현행과 같음)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8.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전국통일, 유권해석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원)	

구 분	기준	요액	참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 계속300	
(2) ~(4) (생략)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건	법인 20,000 중개사5,000	
(나)~(다) (생략)			
2 ~ 5 (생략)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5)~(8) (생략)			
<신설			
7. (생략)			

구 분	기준	요액	참고	개정이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4,500 연장2,700		전국통일
(2) ~(4) (현행과 같음)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1건	법인27,000 개인18,000		전국통일
(나)~(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보건소 관계				
(1)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6,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8,000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6,000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8,000		
(5)~(8) (현행과 같음)				
7.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27,000		전국통일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9,000		
8. (현행 제7호와 같음)				